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소추기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기관 협력 강화, 수사권 남용 방지를 통해
국가 전체 범죄대응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공소청 직제 규정 마련 -

1. 개요

법무부는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공소청법」 및 「검사정원법」에서 위임한 기구·정원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이하 ‘공소청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9. 9.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공소청 직제 제정안은 ❶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조직 폐지·통합 및 기능 전환, ❷중수청의 중대범죄 합동수사 대응 전담부서, 특별사법경찰관 협력부서를 통한 수사기관 협력·지원, ❸부실수사와 사건 암장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송치사건 검토 실질화, ❹형집행·공판·송무·범죄수익환수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출범하는 공소청이 소추기관으로서 차질없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담고 있습니다.

【기구 규모】

구분	공소청 본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지청					
	검찰총장	차장	부	국·관·대변인	과·담당관	청장	차장	부	국	과	청장	지청장	차장	부	국	과
공소청	1	1	6	6	30	6	6	4	6	14	18	42	33	221	28	138

【인력 규모】

계	검사	고공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사무운영	기타	일반직계
8,412	2,292	26	18	88	69	344	1,132	1,252	1,136	1,066	906	83	6,120

2. 공소청 직제 주요 내용

-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권 폐지에 따라 공소청이 소추기관 본연의 기능수행에 집중하도록, 조직을 폐지·통합하고 기능을 전환하였습니다.
- (범죄정보기획관 폐지) 검사 수사개시 범죄 관련 정보 분석·검증·평가 기능을 담당하던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담당관을 모두 폐지하였습니다.
- (본청 중대범죄부서 통·폐합)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2개 부(반부패부, 마약·조직범죄부)를 통·폐합하여 중대범죄부를 설치 하였습니다.
- (과학수사부 폐지) 중대범죄에 대한 현장 과학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과학수사부(검사장급, 4과체제)를 폐지하고 법과학기획관 (차장검사급, 3과체제)으로 축소 개편하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교차감정, 증거보존·분석시스템 운영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 (일선청 기구 통·폐합) 직접수사 기능을 주로 수행하던 인지·합동수사 부서(43부)를 폐지하고, 중대 범죄 전담 대응을 위해 중대범죄전담부(29부)로 통·폐합하였고, 수·조사과(67과)를 전면 폐지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제4차장검사, 대구·부산지방공소청 제2차장검사를 폐지하였습니다.
- (일선청 중대범죄 전담부서 기능 전환) 중대범죄전담부는 기존의 직접 수사가 아닌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실질적 협력·지원과 전문분야 사건 처리에 집중하여 중대범죄 대응역량이 소실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공소청에 수사기관의 합동수사기구 대응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중대사건 합동대응 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기존 검사가 직접 참여하던 범정부 합동 수사기구의 강점과 효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소청에 수사기관의 합동수사구에 대응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중대사건 합동대응 역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지방공소청에 설치될 중대범죄전담부 중 5개 부서는 중수청에 설치될 5개의 합동수사과에 대응하여, 수사개시, 영장신청 단계에서의 법률판단·증거수집 의견제시(개정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3항)를 전담하고, 송치·공소제기-공소유지* 단계에서도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빈틈 없는 중대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수사준칙(안) 제8조의2 : 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공판 재정(在廷)을 요청하면 사법경찰관은 협력하도록 규정

- 또한, 합동대응 사건* 발생 시 각급 공소청의 중대범죄전담부 등 유관 부서를 합동수사단 전담부서로 지정하여, 검사와 합동수사단이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수사준칙(안) 제7조의2 : 국가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청과 관계 수사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합동대응할 사건으로, 개별 수사기관은 협의에 따라 합동 수사단을 설치하고, 각급 공소청은 합동수사단 전담부서·검사를 둘 수 있음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적체된 민생사건 처리에 집중하겠습니다.

- (본청 형사부 확대개편) 공소청 본청 형사부에 형사기획관(차장검사급)을 신설하여, 전체 사건의 94%를 차지하는 일반 형사사건(서민다중피해·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종합적·거시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기존의 사무분장을 조정하여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지도·조언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전담부서(특별사법경찰협력과)를 설치*하였습니다.

* 수사준칙(안) 제12조 : 공소청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검사직무대리* 운영) 경미 민생사건의 상당량을 신속처리**하고 있는 검사직무대리의 정원을 공소청에도 계속 유지(122명)하여, 민생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경력 4·5급 일반직(형사법무직)이 경미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로, 검사직무대리의 처리대상 죄명을 확대하는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 함께 추진 중

** 전체 사건의 16.7%를 처리하고, 배당 후 7일 내 처리율 75.5%, 1개월 내 처리율 99.1%

□ 사경 불송치사건을 실질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 우려를 최소화하도록, 지방공소청 단위에 ‘사법통제부’를 신설하였습니다.

- 현재 불송치 사건은 전담부서 없이 송치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실에서 함께 처리하고 있어, 미제 폭증 등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불송치 사건 기록 검토에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검사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하게 될 상황에서, 불송치 사건의 적법성·적절성에 대해 사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사건암장 등 수사권 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이에 각 지방공소청에 설치될 ‘사법통제부’에서는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토를 전담하면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되는 사실관계확인 제도*를 활용하여 송치사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불송치 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실·위법수사에 대하여는 재수사요구 및 책임처리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 *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 공소제기 여부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 결정,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확인 가능
- 또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에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아 직무배제·징계요구가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법통제부에 재배당하고 객관적 관점에서 보완수사 적정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 통일된 기준에 따라 징계 등을 요구함으로써 사법통제의 적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밖에도, 사법통제부는 ▲ 항고청에서 재기결정한 불기소처분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및 이행결과 통보된 사건을 책임처리하고, ▲ KICS 기록·등재 의무(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국민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 공소청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소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형집행·공판·송무·범죄수익환수 기능에 필요한 조직을 정비 하였습니다.

- (본청 공판송무부 확대개편) 공판·범죄수익환수·형집행 기능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본청 마약·조직범죄부에 설치되었던 범죄수익 환수과를 공판송무부로 이관하였습니다.
- (형집행·송무기능 강화) 일선청에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송무지원 기능 등을 담당하는 공소사무과(총 11과)를 설치하여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선량한 국민들에 대한 추가 피해 우려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 (범죄수익환수 기능 강화) 서울중앙·남부·부산지방공소청에 범죄 수익환수부·과(3부·3과)를 설치하여, 송치-기소-공판-집행-피해자환부 전 과정에서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동결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히 환부하는 한편, 독립몰수제* 도입 후 업무프로세스도 신속히 구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불특정 등으로 기소·처벌이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만을 독립하여 몰수·추징하는 제도('26. 8. 20. 본회의 의결)

3. 향후 계획

사법통제부, 중대범죄전담부 등 개편·신설되는 부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3년 이내의 평가기간을 두고 업무량·성과·실적 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과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 하고 신속하게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공소청이 새로운 형사사법체제 에서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책임자	과장	나하나	02-2110-3248
		담당자	검사	홍석원	02-2110-3694

